신탁계약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칸서스자산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 2011. 10. 18

3. 변경사유

- 투자신탁 명칭 자구수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조항의 변경
-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투자운용인력, 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투자신탁 재무정보·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의 요약 재무내용·운용자산 규모 등 통계자료 갱신

4. 신탁계약서 변경 내용

현 행	변 경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형) 신탁계약서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 신탁계약서**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형)"이라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채권혼합형) 3. 개방형 4. 추가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칸서스 다이나믹 시스템 적립식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이라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혼합채권형) 3. 개방형 4. 추가형
제16조(투자목적) ①(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16조(투자목적)** ①(현행과같음) ②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②~④(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④(현행과같음)

5.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혼합형)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0.4.23 기준	2011.9.30기준
5.투자운용인력	2010.4.23 기준	2011.9.30기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 추가형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

<table>
<tr><td></td><td>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td><td>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td></tr>
<tr><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td></tr>
<tr><td>나. 수익구조</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td></tr>
<tr><td>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td><td><table><tr><td>해지위험</td><td>투자신탁 해지위험</td><td>투자신탁이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table></td><td><table><tr><td>해지위험</td><td>투자신탁 해지위험</td><td>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td></tr></table></td></tr>
</table>

<table>
<tr><td>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혼합채권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r>
<tr><td>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td><td>
<table>
<tr><td>투자대상자산</td><td>평가방법</td></tr>
<tr><td>상장주식</td><td>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tr>
<tr><td>비상장주식</td><td>취득원가 또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tr>
<tr><td>상장채권</td><td>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tr>
<tr><td>비상장채권</td><td>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tr>
<tr><td>외화표시상장채권</td><td>외화표시 증권인 상장채권은 그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tr>
<tr><td>비상장외화표</td><td>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td></tr>
</table>
</td><td>
<table>
<tr><td>투자대상자산</td><td>평가방법</td></tr>
<tr><td>상장주식</td><td>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td></tr>
<tr><td>상장채권</td><td>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tr>
<tr><td>비상장채권</td><td>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td></tr>
<tr><td>장내파생상품</td><td>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경우 가격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td></tr>
<tr><td>국내집합투자증권</td><td>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td></tr>
</table>
</td></tr>
</table>

	시증권	를 기초로 한 가격		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경우 가격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국내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되어 신뢰할만한 시가가 있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부동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취득가격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		
	실물자산	해당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 등을 기초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		

<table>
<tr><td></td><td><table><tr><td>이 없는 자산</td><td>회가 정하는 가격</td></tr></table></td><td></td></tr>
<tr><td>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td><td><table><tr><td>구분</td><td>지급비율(연간, %)</td></tr><tr><td>집합투자업자 보수</td><td>연 0.454%</td></tr><tr><td>판매회사 보수</td><td>연 1.00%</td></tr><tr><td>신탁업자 보수</td><td>연 0.03%</td></tr><tr><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td>연 0.016%</td></tr><tr><td>기타비용</td><td>연 0.059%</td></tr><tr><td>총 보수·비용</td><td>연 1.559%</td></tr><tr><td>증권 거래비용</td><td>연 0.25%</td></tr></table>※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9.05.31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09.05.3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d><table><tr><td>구분</td><td>지급비율(연간, %)</td></tr><tr><td>집합투자업자 보수</td><td>연 0.454%</td></tr><tr><td>판매회사 보수</td><td>연 1.00%</td></tr><tr><td>신탁업자 보수</td><td>연 0.03%</td></tr><tr><td>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td><td>연 0.016%</td></tr><tr><td>기타비용</td><td>연 0.005%</td></tr><tr><td>총 보수·비용</td><td>연 1.505%</td></tr><tr><td>증권 거래비용</td><td>연 0.233%</td></tr></table>※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1.09.30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11.09.30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td><td><table><tr><td>구분</td><td>1년</td><td>3년</td><td>5년</td><td>10년</td></tr><tr><td>다이나믹 시스템</td><td>154</td><td>485</td><td>850</td><td>1,934</td></tr></table></td><td><table><tr><td>구분</td><td>1년</td><td>3년</td><td>5년</td><td>10년</td></tr><tr><td>다이나믹 시스템</td><td>154</td><td>486</td><td>852</td><td>1,940</td></tr></table></td></tr>
<tr><td>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td><td>※ 상기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td><td>※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td></tr>
</table>

일반법인 14%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010.4.23기준	2011.9.30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2010.4.23기준	2011.9.30기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2010.4.23기준	2011.9.30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2010.4.23기준	2011.9.30기준
다.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10.4.23기준	2011.9.30기준
라.운용자산 규모	2010.4.23기준	2011.9.30기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